

免 责 条 款

我们努力提供准确的条约信息并定期核查、更新，但仍难以保证数据库中的条约信息与条约正式文本完全一致。对于使用本数据库信息可能导致的损失或法律纠纷，我们不承担任何责任。感谢您的理解和支持。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

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앞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면서 《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압록강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》에 따라 중국외교부각서 (2011) 부변자 제 6 호에 지적된 조중압록강국경다리건설 인원과 설비, 물자, 운수수단들의 국경통과수속간소화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바입니다.

제 1 조

1. 이 규칙에서 지적된 수속간소화는 다리건설기간 (답사, 설계와 건설인원들이 현장에 진입하기 전의 준비단계 포함) 쌍방의 다리건설인원들과 설비, 물자 (건설자재와 식품, 약품 등 생산 및 생활용품 포함), 운수수단들이 봉쇄건설구역과 신의주-단동 조중국경통과지점을 출입하는데 적용한다.

2. 쌍방의 다리건설인원들과 설비, 물자, 운수수단은 원칙적으로 각기 자기측으로부터 임시부두나 편리한 도로, 부교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한다.

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인원들과 설비, 물자, 운수수단들은 신의주-단동 조중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할수 있다.

쌍방 해당 부문들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.

제 2 조

1. 쌍방은 필요한 구역을 자기 국내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설정한다.

봉쇄건설구역의 건설규모와 건설형식은 통행검사 (변방검사) 와 세관, 군대 등 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봉쇄건설구역의 주변에는 해당한 차단식별표식을 세워야 한다.

2. 봉쇄건설구역의 건설과 일상적인 관리방법은 쌍방의 지방정부가 통행검사 (변방검사) 및 세관, 해사 등 부문들과 협의하여 따로 확정한다.

제 3 조

1. 쌍방 해당 부문들은 다리건설인원들과 설비, 물자, 운수수단들이 자기측으로부터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하거나 신의주-단동 조중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할 때 수속을 간소화한다.

쌍방 해당 부문들은 우선적인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다.

2. 쌍방은 다리건설인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쌍방의 해당한 주관부문에 제기하며 다리건설인원들은 쌍방 해당 부문이 합의한 효력있는 국경통행증을 소지하고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하거나 신의주-단동 조중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한다.

3. 쌍방은 다리건설에 동원된 설비와 운수수단들의 명세서를 사전에 쌍방의 해당 주관부문에 제기하며 해당 설비와 운수수단들은 검사를 거친 후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하거나 신의주-단동 조중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한다

제 4 조

1. 쌍방의 지방정부는 다리건설시작전이나 필요한 때에 통행검사 (변방검사) 와 세관, 해사 등 부문들의 회담을 조정하여 다리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.

2. 쌍방은 시공과정에 봉쇄건설구역을 립시로 출입하여야 할 인원들과 설비, 물자, 운수수단들을 24 시간전에 쌍방의 통행검사 (변방검사) 와 세관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.

긴급한 경우에는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하기 30 분전에 쌍방의 통행검사 (변방검사) 와 세관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5 조

1. 다리건설과 관계없는 선박은 봉쇄건설구역안의 압록강수역에 정박할수 없다.

2. 다리건설인원과 설비, 물자들을 실은 선박들은 쌍방이 합의한 경로를 통하여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하여야 한다.

제 6 조

1. 조선측은 시공과정에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중국측 다리건설인원들이 조선측 봉쇄건설구역안에서 필요한 통신수단을 사용하며 컴퓨터국부망체제를 구축하도록 허용한다.

2. 쌍방의 해당 부문들은 통신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그 류형과 수량, 성능과 규격, 주파수, 호출부호를 토의확정한다.

제 7 조

1. 쌍방은 자기 국경내에 있는 다리건설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건설을 끝내는데 필요한 재산과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2. 다리건설인원들은 자기가 머무르고있는 나라의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.

제 8 조

이 규칙은 쌍방이 외교문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리가 완공된 후 쌍방이 합의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회답각서와 중국외교부 각서 (2011) 부변자 제 6 호는 조중쌍방사이의 합의문건으로 될것이며 압록강국경다리 건설인원과 설비, 물자, 운수수단들의 국경통과수속간소화에 관한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것을 알립니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 다시한번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
주체 100(2011)년 4월 1일

